

공공건축물 대체에너지 의무 이용화 정책

이 승 언*, 이 승 민*, 김 상 호**, 원 장 목**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연구부, **에너지관리공단

Renewable Energy Obligation for Public Building Sector

Seung-Eon Lee*, Seung-Min Lee*, Sang-Ho Kim**, Jang-Mook Won**

*Building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Gyeonggi 411-712, Korea

**Korea Energy Management Cooperation, Gyeonggi 449-994, Korea

요 약

대체에너지는 과도한 초기투자의 장애요인에도 불구하고 화석에너지의 고갈문제와 환경문제에 대한 핵심 해결방안이라는 점에서 선진 각 국에서는 대체에너지에 대한 과감한 연구개발과 보급정책 등을 추진해오고 있다. 최근 유가의 불안정, 기후변화협약의 규제 대응 등 대체에너지의 중요성이 재인식되면서 에너지공급방식이 중앙공급식에서 지방분산화 정책으로 전환하는 시점과 맞물려 환경, 교통, 안보 등을 고려한 Local자원의 활용측면에서도 적극적인 추진이 요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에너지의 특성은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위한 미래에너지원으로서 우리나라와 같이 에너지자원의 빈국은 기술개발을 통해 에너지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화석연료의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의 발생이 없는 환경 친화적인 자원인 반면 화석연료의 가채 년수가 석유는 41년, 석탄은 218년, 천연가스는 63년인 반면 비교갈성 재생가능한 에너지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대체에너지는 공공 미래기술로서 장기적인 선행 투자와 시장전망의 불확실성 때문에 정부주도의 추진이 필요한 분야이다.

이에 정부는 대체 에너지의 보급 촉진 및 육성을 위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을 제정한다 바 있으며,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적 건축물에 대한 대체 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대체에너지 이용의무화 정책은 공공기관의 신축 건축물에 대해 일정비율의 대체에너지를 의무적으로 도입·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대체에너지설비의 양산체제 구축을 통한 생산코스트 저감으로 자발적인 민간 수요 확산 분위기 조성하는 것에 근본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산업자원부는 2002년 3월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개정시 대체에너지의 의무적 이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의 구체적인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가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의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에 따른 대상 건축물의 규모, 적정 의무화 수준, 대체 에너지이용 의무화에 따른 행정적, 기술적 절차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참고문헌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대체에너지 이용 의무화를 위한 추진 방안 연구”, 2003. 6
2.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10 에너지비전 에너지정책방향과 발전전략” 2002. 12